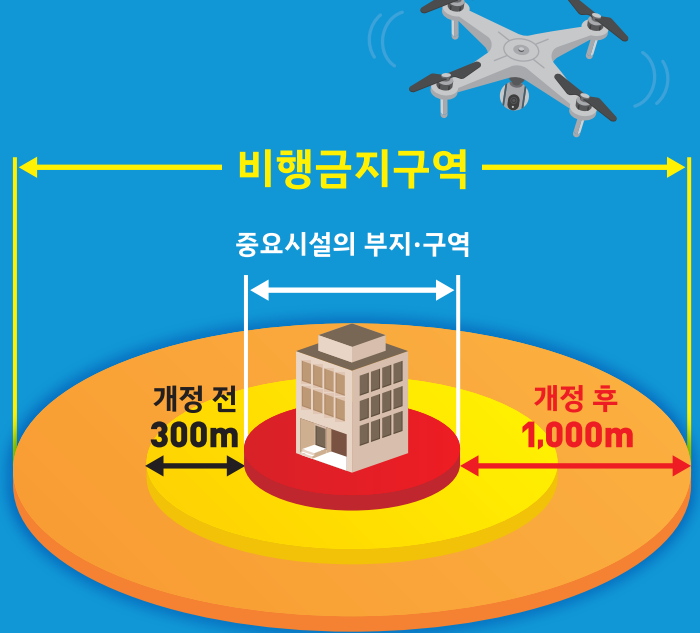


드론 등의 비행금지구역이 1,000m 로 확대 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사전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개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됩니다

비행금지구역 확대

중요시설 부지 등의 주변 '약 300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약 1,000m'로 확대됩니다.

처벌 규정 신설

중요시설 '부지 등' 상공 비행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에 더해, '부지 등' 이외의 비행금지구역 상공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설

'부지 등' 상공 비행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부지 등' 이외의 비행금지구역

상공 비행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웹사이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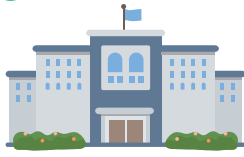
중요시설이란

1 국가의 중요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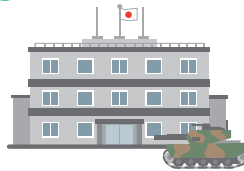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최고재판소, 황궁 등)



2 외국 공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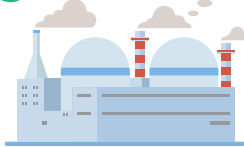
3 방위 관련 시설



4 공항



5 원자력 시설



※ ① 및 ②에는 국내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장이나 외국 주요 인사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준비·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 등,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비행금지 예외 사항

1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상공 비행

(예) 측량 또는 인프라 점검, 취재·보도를 위한 항공촬영 등

2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한 해당 토지 상공 비행

(예) 소유·점유 중인 농지에서의 농약 살포, 자택 정원에서의 드론 조종 연습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상공 비행

(예) 재난 대응 업무 등

사전 신고 절차의 자세한 내용

상기 ①~③의 비행금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찰 등에 대한 사전 신고 (원칙적으로 비행 시작 48 시간 전)가 필요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 등이란

소형 무인기

(중량 100g 미만 기체 포함)

- 드론
- RC 비행기
-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 등



특정 항공용 기기

- 기구
- 패러글라이더
- 행글라이더
- 분사식 부유 기구 등



'항공법'에 따른 무인항공기 (중량 100g 이상 기체)에 관한 규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 따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경찰)** 등에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예외 사항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고는 원칙적으로 비행 시작 **48시간 전까지** (재난, 기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행 직전까지) 해야 합니다.

모든 비행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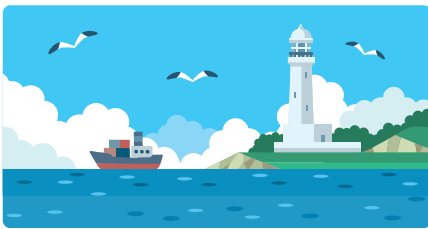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경찰**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통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창구 외에도 **e-Gov 전자신청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Gov 전자신청 서비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경찰)에 사전 신고 외에도, 다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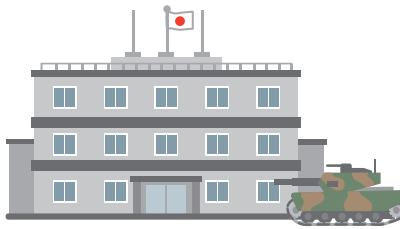
해역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관구 해상보안본부장에게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상보안청 (일본어 전용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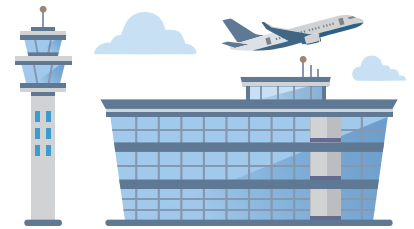
방위 관련 시설 주변 비행금지구역



해당 방위 관련 시설의 시설관리자에게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위성

공항 주변 비행금지구역



해당 공항의 시설관리자에게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성 (일본어 전용 페이지)

대상 시설관리자 등의 동의 취득 절차

비행금지 예외 사항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중,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 등에 사전 신고 시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 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각 시설 관리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